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5. . . (제 회)	

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 
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출 자	강북구청장
제출 연월일	2015. . .

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칩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 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, 개정된 관계법령  
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별지 서식의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함  
(안 별지 제1호, 제2호 및 제5호 서식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(안 제2조 외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1)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 제1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 . . . ~ . . . ) 결과,

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##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6조 규정”을 “제16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 중 “제3호까지의 규정”을 “제3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%”를 “2퍼센트”로, “1%”를 “1퍼센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, 제2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

<별지 제1호서식>

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																		
신청인	①대표자 성명		②생년월일															
	③업소명		④전화번호															
	⑤주소(소재지)		⑥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					
사업체규모	⑦영업장총면적	m <sup>2</sup>	⑧자산총액	천원														
대상업종	⑨업종	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식품제조업, 식육 판매업, 기타																
자금용자 신청내역	⑩실소요금액		⑪용자신청금액	⑫비율														
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융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 금융자를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<tr><td>구청확인</td></tr><tr><td>확인자</td></tr><tr><td>직명</td><td>성명</td></tr><tr><td></td><td>(인)</td></tr></table>	구청확인	확인자	직명	성명		(인)	년 월 일		<table border="1"><tr><td colspan="2">지정은행확인</td></tr><tr><td>은행명</td><td></td></tr><tr><td>대출</td><td>가능, 불가능</td></tr><tr><td>확인자</td><td>(인)</td></tr></table>		지정은행확인		은행명		대출	가능, 불가능	확인자	(인)
구청확인																		
확인자																		
직명	성명																	
	(인)																	
지정은행확인																		
은행명																		
대출	가능, 불가능																	
확인자	(인)																	
<b>강북구청장귀하</b>																		
구비서류 1.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.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																		

<별지 제2호서식>

##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

신 청 인	①성 명		②생 년 월 일	
	③업 소 명		④주 소	
시설현황 및 사업계획	⑤영업장총면적			m <sup>2</sup> (      평)
	⑦계획내용			
자금유자 신청내역	⑧실소요금액	⑨유자신청금액	⑩비율(⑨/⑧)	⑪비 고

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(모범음식점운영)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강 북 구 청 장 귀하

<b>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(모범음식점)</b>					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	
	업소명		주소		
시설현황 및 사업계획	영업장 총면적		m <sup>2</sup>		
	계 획 내 용	시설 개선			
		운영			
자금용자 신청내역	실소요금액	용자신청금액			비고
		계	시설개선	운영	
위와 같이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」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					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		
신청인 (인)					
<b>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</b>					

부     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행	개          정          안
제2조(대출업무의 위탁) ① <u>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</u> 은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,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.	제2조(대출업무의 위탁) ① <u>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</u> 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융자신청 및 대상선정) ① 조례 제16조 규정의 "규칙이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	제7조(융자신청 및 대상선정) ①----- ----- <u>제16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융자 및 상환조건) ①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9조(융자 및 상환조건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

1. ~ 3. (생략)

4.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: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용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

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%(다만,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연리 1%)로 하며,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 
----- 제3호까지  
지-----  
-----

②-----  
-----  
--- 2퍼센트-----  
----- 1퍼센트-----  
-----  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## 관계법령

### □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
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